**(이하”고객사”라 함)와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이하”회사”라 함)은 “고객사”와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고객사”가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상품”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 “고객사”가 인터넷 상에 설치한 매장에서 이용자가

MOBILPAY를 이용하여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에 “회사”가

제휴한 카드사를 통해 무전표 매출승인 및 입금, 대금결제 기타 관련

서비스를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인터넷 전자결제 통신프로그램 (MOBIL전자결제시스템: MOBILPAYBasic)의

제공

2.위 프로그램의 설치 안내문 제공

2) 은행이체 서비스 : “고객사”가 인터넷상에 설치한 매장에서 회원이

MOBILPAY를 이용하여 “고객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통해 은행 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은행이체라 함은 실시간 계좌이체를 의미한다.)

3) 가상계좌 서비스

3-1) 가상계좌 결제정보 : 이용자가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회사”의 전자결제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제시한 이용자의 고유값,

구매자명, 거래계좌발급은행, 연락처, 이메일, 주소, 입금자명 등 가상계좌

거래승인을 받기 위한 제반 정보를 말한다.

3-2) 가상계좌 서비스 : “회사”가 은행 내에 “회사”의 대표 모계좌를 두고

가상의 자계좌를 “고객사”의 이용자에게 부여하여 온라인상에서 “고객사”의 판매대금 수납 및 결제업무 등 금융업무를 “회사”의 명의로 “고객사”를 대신하여 처리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휴대폰 결제 서비스 : “고객사”의 이용자가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휴대폰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난수로 생성되어 이용자가

소지한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 형태로 발송된 승인번호를 결제창에

입력함으로써 결제를 완성시키는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를 말한다.

5) 상품권 서비스 :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선불카드 및 상품권 중

모빌페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불수단을 말한다.

6) 이용자 : “고객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대표가맹점, 대표가맹점 상점 : “고객사”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회사”가 “고객사”를 위하여 신용카드 처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표가맹점이라 한다.

대표가맹점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고객사”의 매장을

대표가맹점 상점이라고 한다.

8) 3자 가맹점 : "고객사"가 각 신용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의 주체가

되며,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모든 대금정산은 "고객사"와 가맹 계약된 각

카드사로부터 지불을 받는다. (단, "회사"는 승인대행의 역할을 함.)

9) 상품 : “고객사”가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용역을 말하며, 상용프로그램, 데이터는 물론 회원이 인터넷

상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포함한다.

10) 전자결제서버 : “고객사”가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판매한 상품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1) 본인인증서비스 :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외에

생년월일 및 비밀번호의 일부를 입력 받아 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단, 상기 본인인증 서비스는 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실제 본인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12) 무이자할부서비스 : 할부판매 시 ”고객사”가 이용자 대신 할부 수수료를

부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3) 에스크로(Escrow)서비스 : 2006.4.1일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전자상거래 시 공신력 있는 제3자

(에스크로사업자-“회사”)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고객사”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거래상의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14) 내죠여왕결제 서비스 : “고객사”의 이용자가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휴대폰번호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용자는 문자 메시지의 URL을 통해 MOBIL PAY에 접속하여 결제를

진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5) 간편결제 서비스 : 이용자가 간편결제 사업자에게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등록하여,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별도의 정보입력 없이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6) 결제기관 : “서비스”를 위하여 결제인가, 수납대행, 결제대금 입금을 제공하는

신용카드사업자, 이동통신사, 은행 등의 원천 기관을 말한다.

17) 서비스 제한 또는 불가업종 : “결제기관” 또는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결제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업종을 의미하며, “본 계약” 체결

이후에도 “결제기관” 또는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업종 및 제한사항은 추가,

삭제 및 변동될 수 있다.

**제 3 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2) 전항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한 서면 및

유선(이메일)의 통보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며 그 이후도 같다.

3)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본 계약 제5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및 이용 서비스 내역은 **[MOBILPAY 전자결제서비스 신청서]와** 같다.

**제 5 조 (계약의 해지 및 연장)**

다음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서면, 유선 및 이메일 통보로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사” 또는 “회사”가 본 계약 및 관련 부속약정 사항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고객사” 또는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

3) “고객사” 또는 “회사”에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 또는 신청되는 경우

4) “고객사”가 제공한 상품에 관하여 회원의 이의제기(철회. 항변권 및 본인

미사용 주장 포함)나 신용 구매분에 대한 카드사의 대금연체가 대량 또는

빈번히 발생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가 부적합하다고 결제기관 또는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5)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고객사”의 소유권 기타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 판매, 양도하는 경우 “고객사”의

사이트에서 불법 또는 부정매출(현금성 대출처리 등)이 발생한 경우

6) 기타 건전한 상거래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계약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회사”의 심사 기준상 비정상적인 인터넷 전자상거래라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최초 “회사”와 계약 당시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이 상이하거나 “회사”에 통보

없이 추가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 다단계판매, 자점매출, 현금

깡, 경매,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되지 않은 물품[서비스]판매, "회사"의 심사

기준상 불가한 상품 및 서비스 형태의 서비스 제공 등)

8)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결제승인 요청이 없거나 사전 서면 통지없이

타 업체로 전자결제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

9) “회사”에게 폐업 및 해제요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10) "고객사"가 "회사"에게 등록 요청한 사이트(홈페이지)외 제3의 사이트에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

11) 제22조 (계약 변경 사항 통보 및 손해배상)에 명시한 변경내용의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사"가 쇼핑몰을 운영하여 "회사"가 이를 확인하고

"회사"의 전자결제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2) “고객사”와 “회사”가 서면 합의한 경우

**제 6 조 (“고객사”의 의무)**

1) “고객사”는 상품에 대한 제조, 판매 등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당국의 허가, 인가 또는 신고 등 제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드시

필(必) 함으로써 적법하게 전자상거래행위를 하여야 한다.

2) “고객사”가 “회사”의 파트너가 될 경우 “고객사”는 이용자와 “회사”에 대해

성실하고 신뢰성 있게 동 상점을 운영하여야 하며, “고객사”의 불성실한 상점

운영으로 인하여 “회사” 및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고객사”는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사”측에 필요한

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어야 한다.

4) “고객사”는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MOBILPAY 전자결제서비스 신청서]의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수수료 및 등록비, 연 관리비를 “회사”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5) “고객사”는 상품의 주문 및 지불완료를 확인한 후에 “고객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배송(혹은 서비스제공) 하며, 이때 “고객사”는 이용자의

부정한 거래에 대비하여 향후 거래자의 확인 또는 추적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정하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고객사”가 “회사”의 대표가맹점 상점으로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케이지**

**모빌리언스**'의 명의로 대금이 청구됨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동

상점의 주요화면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때 “회사”의 로고(이미지)를 삽입한다.

7) "고객사"는 신용카드가 사용될 때(승인) 본인에 의해서 사용되는지 필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추후 타인의 사용으로 인한 민원 및 "회사"에게 피해 발생 시 해결될 때까지 모든 책임은 "고객사"가 지도록 한다.

8) 거래의 취소, 환불 또는 부정한 거래로 인한 사고 시 이용자의 확인, 추적

또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 “고객사”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회사”에게 전송한다.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메일주소 등 일체의 배송 및 서비스 제공정보)

8-1) 증빙자료에 대해 “고객사”는 매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회사"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제 3 영업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및 비정상 거래에 대한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8-2) "고객사"는 "회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모든 거래내역

(이용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구매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획득한 후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거래내역의 진위성 몇 본인사용여부를 이용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9) 사고발생(쇼핑몰의 물품 미배송/부도, 미수금발생 등)에 따라 "고객사"에서

"회사"와의 계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로써

“고객사”는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10) “고객사”는 계약해지 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 이용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해 이용자가 민원(결제기관 접수 민원 포함)을 제기할 경우, 신의성실 원칙

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회사”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본 계약기간 중 이용자가 구입한 “고객사”의 상품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그 판매대금을 원활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2) “회사”는 “고객사”의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가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

하고 편리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고객사”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회사”의 전자결제서버가 연동하도록 지원한다.

3) “회사”는 “고객사”가 파트너가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각 신용카드사들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고객사"의 판매물품 및 단가의 특성이 각 개별 카드사의 등록정책에

맞지 않을 경우, 해당 카드사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4) 전자결제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사”측에 설치된 전자시스템에 대해 기능의

추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게 유선,

서면 및 이메일 공지 등으로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선한다.

5) “회사”는 전자결제서비스를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서비스 관련 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에 인하여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객사”에게 사전통보하기로

한다. 단,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 (거래승인 및 본인인증)**

1) 거래승인의 의미는 그 거래에 사용되는 카드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거래 자체의 진위성 및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는 “고객사”의 책임으로 한다.

2) “회사”,”VAN사”,”신용카드사”의 3자간 제휴에 의하여 제공하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서비스를 “고객사”가 선택 하여 이용할 경우 “고객사”는 동 서비스

이용수수료(MOBILPAY 전자결제서비스 신청서 참조)를 부담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고객사”가 보내는 메시지 전문에 의거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처리하도록 하며, 인증에 대한 책임소재는 전적으로 “고객사”가 보내는

메시지 전문을 기준으로 한다.

4) 해외카드의 경우 부도율이 높은 관계로 “회사”의 시스템에서는 승인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고객사”가 해외카드 서비스 신청서를 통해 요청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수용하여 승인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사”의 책임으로 한다.

5) 국내발행 카드 중 일부 미 인증카드의 경우 인증서비스 불가로 승인이 되지

않으나 “고객사”가 요청할 경우 “회사”는 본인인증 절차 없이 승인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사”의 책임으로 한다.

6) 4, 5항에 명시된 해외카드 또는 국내 미 인증카드에 대한 승인은 “고객사”가

“회사”의 별도의 심사 및 신청함을 기본으로 한다.

7) "회사"는 "고객사"의 전자결제서비스 신청서를 접수받고 "회사"의 심사기준 및

“고객사”의 신용도, 매출유형(판매형태, 판매물품 등),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 빈도, 민원해결을 위한 협조성 등 "회사"의 리스크관리운영 방침에

따라 “고객사”에 대하여 신용카드(선불카드, 직불카드) 1회 승인 한도 및

월 **승인한도액을**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단, "회사"와의 계약성립 이후 "고객사"의 매출에 대한 민원발생빈도, 매출

유형 (판매형태, 판매물품 등) 등을 기준으로 변동할 수 있다.).

8) "고객사"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비정상거래

및 신용구매분에 대한 카드사의 대금연체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승인이

제한된 경우, 신용카드사의 승인제한 조치에 따른 모든 손실 발생 부분은

"고객사"가 책임을 진다.

**제 9 조 (거래의 매입요청)**

1) **매입요청** : “고객사”는 반드시 이용자가 구입한 상품 및 용역이 이상 없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물품배달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 또는 물품배송이

완료된 후 이용자의 구입상품 및 용역대금을 “회사”가 지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회사”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이를 근거로 해당 카드사에 매입을

요청한다.

2) 요청기간 : 전항의 매입요청은 자동매입을 기본으로 하되, **"고객사"의 매입**

**요청 기준이 자동매입이 아닌 수동매입의 경우에는 7일을 기본단위로 한다.**

(단, "고객사"의 요청이 있을 시는 월 1회 혹은 월 2회 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나 승인 후 1개월이내에 매입요청을 하도록 하며 **매입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고객사"에게 책임이 있다**.)

3) 매입요청시기 : 매입요청의 접수마감은 승인당일과 같으며, 접수마감일 이후

매입요청건은 차기 정산일에 포함되어 정산된다. “회사”의 사정으로 매입

요청시기가 변경될 경우 “고객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통보한다.

3-1) 자동매입의 경우는 승인시점에 자동으로 매입요청되며, “회사”의 사정으로

매입 요청시기가 변경될 경우 “고객사”에게 통보한다.

4) 취소기간의 확보 : “고객사”의 매출내역에 대하여 매출 취소율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사”의 매입요청시기를 조정하여 취소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제 10 조 (은행계좌를 이용한 은행이체 서비스)**

1)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

1-1)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허용한 일자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1-2) 실시간 계좌이체 환불시 거래건의 승인수수료는 “고객사”의 부담으로

하고 “회사”는 “고객사”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단 승인일 당일에 취소한 경우에는 승인수수료가 반환된다.

1-3) 에스크로서비스에 적용되는 계좌이체 거래 건에 대하여는 아래

“에스크로서비스 특약서”를 우선하여 적용(정산)한다.

2) 가상계좌 서비스

2-1) 가상계좌 관리

① “회사”는 “고객사”가 사용할 가상계좌를 배정하고 “고객사”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가상계좌번호를 “고객사”의 이용자에게

부여한다. 단, “고객사”의 이용자가 가상계좌번호를 부여 받은 후 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가상계좌를 회수한다.

② “고객사”는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가상계좌번호를 “고객사”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입금과 관련된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고객사”의 책임으로 한다.

③ “고객사”는 가상계좌를 부여 받은 “고객사”의 이용자에게 해당 계좌가 “고객사”의 이용자가 은행을 통하여 “회사”에게 결제대금 거래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상계좌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④ “고객사”는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가상계좌를 “회사”가 허용한 업무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2) 거래확인

① “고객사”는 이용자의 가상계좌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이용자의 거래내용을 “회사”와 접속된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출력된 자료 또는 화면조회에 의하여 확인하며, “회사”는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고객사”의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내역은 명백한 오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사”와 “회사”간에 상호 연결된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회사”가 “고객사”에게 전송한 화면조회로서 확정된다.

2-3) 가상계좌의 제공시간 및 취소(환불)

①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시간은 연중 무휴 365일 제공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환경에 따라 제공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가상계좌를 통하여 거래된 금액의 거래취소는 불가하며, 이때 “고객사”의 이용자가 환불 및 취소를 요구할 경우 환불은 “고객사”의 이용자로부터 동 내용을 접수하여 “고객사”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2-4) 에스크로서비스에 적용되는 가상계좌 거래 건에 대하여는 아래

“에스크로서비스 특약서”를 우선하여 적용(정산)한다.

**제 11 조 (휴대폰 결제 서비스)**

1) “고객사”가 “휴대폰소액결제”이용 중 월별 1회차 수납률이 55% 미만일 경우,

“회사”는 정산대금 지급을 중지하고 정산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2) 전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객사”는 해당월의 기 지급된 선급금을 반환하

여야 하며, “회사”는 반환된 금액을 전항에 따라 변경된 정산방식으로 재정산

하여야 한다.

3) 휴대폰 결제 서비스의 경우 미성년자는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고객사”는 미성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4) 휴대폰 결제 서비스의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에 대한 부모의 추후결제

정지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상기 1,2항과 같이 미성년자 결제 및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받아 발생된 모든 문제(민원 등)에

대해서는 “고객사”는 책임지고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6) 본 조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이는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7) 이동통신사에서 규정하는 휴대폰 결제 서비스 이용 불가 휴대폰은 “청소년

요금제 이용, 청소년 명의, 고객요청에 의한 결제 불가 선불폰,

법인폰(법인명의)”으로,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8) 휴대폰으로 결제한 건에 대해서는 결제 해당월 중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단,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9) “고객사”는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에게 “고객사”와 “이용자”가 체결하

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계약상 대금채권의 채권자를 “회사”로 정하는 약정을

“회사”가 “고객사”를 대리하여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

한다.

10)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이미 대금 청구한 건에 대해서 “고객사”가 거래

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제 12 조 (상품권 서비스)**

1) 상품권 서비스란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선불카드 및 상품권 중

MOBILPAY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불수단을 말한다.

2)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3) “고객사”는 건전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약속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행사의 시스템 장애 등)로

상품권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상품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5) 기타 상품권 서비스 이용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은 각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발행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한다.

**제 13 조 (간편결제 서비스)**

1) 본 서비스의 종류로는 “회사”와 제휴된 간편결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

2)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 및 정산주기는 **[MOBILPAY 전자결제서비스 신청서]**와 같다.

3) 기타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은 각 간편결제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한다.

**제 14 조 (이용수수료 정산)**

1) 정산대상 : 신용카드의 경우 “회사”의 대표가맹점을 통하여 거래승인을 받은

후, 매입요청 건을 정산대상으로 하며, 은행이체의 경우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이체된 건을 정산대상으로 한다.

2) 정산시기 : 매입요청 후 [MOBILPAY 전자결제서비스 신청서]의 정산주기에 맞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일이 휴일 및 공휴일의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한다.

3) 정산대금의 지급 : “회사”는 정산대금의 지급 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무이자할부수수료, 인증수수료, 은행이체 수수료,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연 관리비 및 기타 차감금액을 공제한 대금을 “고객사”에게 지급한다.

3-1) 휴대폰 결제 서비스의 정산대금은 **[MOBILPAY 전자결제서비스 신청서]**에 따라 정산하되, 이동통신사

에서 미 결제된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회사”는 “고객사”에게 정산하지

않는다. (이동통신사에 정상적으로 수납된 금액만 정산함)

3-2) 상품권(해피머니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의 정산은 매월 1회로 하며,

승인이 발생한 날의 익월 25일에 수수료(부가세 별도)를 제외한 금액을

“회사”는 “고객사”에게 지급한다.

3-3) 에스크로서비스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거래 건에 대하여는 아래의

“에스크로서비스 특약서”를 우선하여 적용(정산)한다.

4) 세금계산서 발부 : “회사”는 “고객사”의 대금청구에 대하여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산하여 “회사”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고객사”에게 지급하고,

“회사”가 공제한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고객사”에게 교부한다.

5) “고객사”는 “회사”에게 거래취소 분 및 기타 차감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는 위 거래취소 분 및 기타 차감금액을 “고객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고객사”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차감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게 과 지급액 및 차감 부족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제 15 조 (등록비 및 연 관리비 입금 / 환불기준)**

1) “고객사”는 “회사”와의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을 위하여 등록비( 면제 )만원

(VAT포함)을 “회사”에게 입금한다. **(등록비 내역은 MOBILPAY 전자결제서비스 신청서 참조).**

2) “회사”는 원활한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서비스 개발 및 유지

보수 관리비용으로 연 관리비를 “고객사”에게 청구한다. (초기 전자결제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간 선불( 면제 )만원 [VAT포함])

3) 기 납부된 등록비 및 연 관리비를 단순변심 등 “고객사”의 귀책사유로는

환불이 불가능 하다.

4) 연회비 청구는 “고객사”의 결제대금에서 차감 정산하며, “고객사”의 매출이

3개월이상 발생치 않아 연회비 차감정산이 불가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된다.

(단, 최초 가입시 카드결제나 기타 수단으로 선 입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6 조 (이용자의 구매취소 요청 및 민원의 처리)**

1) "고객사"는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중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고객사"의 책임하에 제반문제를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문제해결 노력에 최대한 협조한다.

2) 이용자와 관련기관(금융기관 등)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 시 "고객사"와

"회사"는 상호 확보한 거래내역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제출 요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제공, 통지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이나 가맹점규약에 의한 정당한 매출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환불 또는 반품을 요구할 경우 ”고객사”는 당해 이용자에게 구매시점 또는

서비스종료시점의 금액을 매출취소 해준다.

이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사”에서 부담한다.

4) 정상적으로 배송 완료된 상품에 대해 이용자가 매출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사”는 회원의 취소요구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거래승인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교환 또는 환불요구에 대해 “고객사”는 접수시점으로부터

1영업일이내에 교환 또는 환불여부를 고객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 건이라 하더라도 해당 민원건의

매출발생일이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라면 전적으로 “고객사”가 책임지고

처리토록 한다.

7) "고객사"는 "회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이용자와의 거래에 대해

반품처리 또는 비정상 거래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회사"의 정당한

취소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해당 거래의 취소 의무와 취소건에 대한 대금의

환불 또는 상환의 책임이 있다.

8) 휴대폰 결제, 상품권서비스 관련 취소 내용은 제11조 7항과 제12조 6항에

의거한다.

**제 17 조 (비정상 및 부정거래 사고에 대한 처리)**

1) 부정한 또는 불법적 거래로 인한 매출(현금성 대출, 본인 미사용건[제3자도용

사고]등)에 대하여 “회사”는 “고객사”에게 대금정산 의무를 지지 않으며 만약

“고객사”에게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사후에 차감정산 또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

2) "회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 가운데 "고객사"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불법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발생시킨 비정상거래에 대하여 "고객사"는 "회사" 또는 관련기관(금융기관등)

으로부터 서면,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내역

관련 자료와 함께 제6조 8항에 명시한 제반 증빙자료(배송장, 주문내역,

수령증 등)를 요청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사" 또는 관련기관(금융기관 등)에서 비정상 거래로 확인된 해당 거래의

취소 처리를 요청할 경우 "고객사"는 즉시 취소처리를 하여야 하며,

“고객사”의 처리가 7일동안 지연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 내역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4) "고객사"의 사이트에서 발생한 결제수단 별 거래 중 비정상거래로 인하여

관련기관(금융기관 등)에서 "회사"의 정산대금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 조치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반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된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회사"는 "고객사"의 정산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류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부족할 경우 "고객사"는 "회사"가

지정, 요청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손실금액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제 18 조 (계약담보)**

1) “고객사”의 매출이 현금성 대출로 판명되거나 제15조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빈번히 발생(민원발생)하는 경우 또는 제5조와 제15조의 (모든 조항 해당) 비정상적인 해당매출이 발생된 경우 해당매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대금 지급보류를 통하여 “회사”의 “손실보증금”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만일 해당매출이 “고객사”에게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사후에 해당금액만큼 차감정산 또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

2) “고객사”는 최초 계약의 담보로 “회사”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증보험 증권증서

(회사기재 )만원을 보증보험사에서 발부 받아 “회사”에게 제출한다.

2-1)”회사”와의 계약해지 시에도 보증보험 증권은 유효하며, “고객사”는 보증보험

증권을 보상기간까지 해지할 수 없다.

2-2) “고객사”가 “회사”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보증보험 증권은 1년 단위로 계약

하되, 보증보험 계약 만기 2주전까지 계약 연장을 하여야 하며 연장하지 않을 시, “회사”는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지급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

3) “회사”는 “고객사”의 판매신용도 및 신용판매실적, 민원접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 1항의 “손실보증금”의 증액 또는 새로운 담보를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고객사”는 전 1항의 “손실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을 “회사”에게 따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5) 전 1항의 손해는 “고객사”가 영업점 폐쇄, 영업중단, 기타 사유로 이용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본 계약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각종 피해를 입힌경우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6) “고객사”가 본 계약에 근거하여 현금 또는 정산대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보류 등의방식으로 “회사”에게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 “고객사”는 이를 제3자에게 채권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9 조 (손해배상)**

1) 이용자의 이의제기(주문사실 불인정, 금액상이, 물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반환요청, 배송사고, 파손 등) 또는 주문접수과정에서 “고객사”의 과실로 이용자와

“고객사”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적으로 “고객사”가 해결해야 하며 “회사”또는 이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객사”는 “회사” 또는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고객사”가 전 1항에 규정한 “고객사”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동 매출을 취소하거나 다음 번 청구금액에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변제 및 충당 등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회사”는 “회사” 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고객사”가 배상하지 못하였을 경우 “손실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4)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위반 또는 법규위반 등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양 당사자는 전항의 손해를 자신의 비용으로 해결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 20 조 (계약담보의 환원)**

본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고객사”와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이의제기, 신용카드사, 국세청 등 관공서에서 제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 “손실보증금”을 “고객사”에게 환원할 수 있다. (단, 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모든 사항은 제17조 2항, 2-1호, 2-2호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제 21 조 (정보유출 금지)**

“고객사”와 ”회사”는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 이용하면서 획득하게 된 이용자의 정보,

쌍방의 대외비 기술자료, 영업비밀 또는 기타 업무상 기밀사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상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하고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22 조 (부 칙)**

1) “고객사”가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 계약상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이나 규약 등이 적용되며 각종분쟁은 이를 근거로 처리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카드사의 가맹점 규약, 선불카드 또는 직불카드 관련약관

또는 규약, 은행법,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거래 기본약관 등 금융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

관련법령 및 규정

2) 본 계약 내용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고객사”와 “회사”가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적인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 23 조 (계약 변경 사항 통보 및 손해배상)**

1) “고객사”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관하여 사이트 및 대표자의 신상 등에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통보 지연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민원 및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객사”는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하며, 이때 "회사"는 "고객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다.

(여기서 통보방법은 서면, fax 또는 이메일을 이용한다.)

2) “고객사”가 “회사”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할 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대표자의 변경

나. 폐업 및 업종변경

다. 사이트 주소 및 대금결제계좌 변경

라. 판매물품 변경 및 추가사항

마. "고객사"의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

3) “회사”의 정책 및 카드사의 정책상 발생하는 각종 변동사항(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회사”는 “고객사”에게 변경 15일전까지 이메일 또는 서면(공문 또는 fax)으로 통보 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단, 사업자번호 변경 시 신규 계약 필수 (제신고 불가)**

**대표자만 변경 시 제신고 가능하나 신규 PG계약서 및 구비서류 접수 필수**

**제 24 조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고객사”와 “회사”가 각각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등의 부과는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개시된다.

**제 25 조 (기타)**

1) 본 계약에 추가하여 적용할 약정(특약) 및 조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약서를 통하여“고객사”와 “회사”가 상호 날인 후 약정하도록 한다.

2) 상호, 대표이사, 수수료 등 변경사유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존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신 계약에서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고객사”와 “회사”는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사업자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요망**

20     년     월     일

|  |  |
| --- | --- |
| **(고객사 : 이용자)** | **(회사 : 제공자)** |
| ※사업자등록증의 정보로 기재 또는 법인명판 |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 |
| 상 호 명 :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
| 주 소 : | 케이지타워 16층 (순화동) |
| 대표(이사) :                                     (인) | 대표이사 유 승 용 (인) |
| **※ 개인사업자:대표자 인감/법인사업자:법인 인감날인 필수** |  |

**1. 상점 기본 정보**

|  |  |  |  |
| --- | --- | --- | --- |
| **상호(법인명)** (필수기재) |  | **영문상호**(법인사업자 필수기재) |  |
| **대표자 성명**(필수기재) |  | **대표자 영문성명**(필수기재) |  |
| **주민번호** (필수기재) | **-** | **국적** (필수기재) |  |
| **업종** |  | **업태** |  |
| **연락처** (필수기재) |  | **E-mail 주소** |  |

**2. 실제소유자 확인 기재사항**

※ 특정금융거래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및 시행령 제10조의5(실제소유자 확인)에 따라 작성이 필요한 서식입니다.

|  |  |  |
| --- | --- | --- |
| **개인사업자** | **대표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합니까?** | 예  아니오 (‘아니오’ 선택시 하단 실제 소유자 정보란 기재) |
| **법인사업자**  **· 임의단체** |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대상** | 국가·지자체·공공단체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
|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  (우측 1,2,3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하단 실제소유자정보란 기재) | 다음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25%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최대 지분 소유자 중 1인  2) 1)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최대 지분 소유자 중 1인  ② 대표자,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③ ①,②외에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2)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 **실제소유자**  **정보**  **(필수 기재)** | 성명(한글) :       성명(영문) :      국적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 |
| ※ 실제소유자정보 기재시 유의사항  **체크** 또는 기재사항은 **작성** 부탁드립니다.  (한글성명 : 정자로 기재, 영문 : 여권의 영문명 기재, 성별 : 남,여, 체크 ) | |

**3. 고객확인 관련 추가 기재사항**

|  |  |  |
| --- | --- | --- |
| **구분** | | **내용기재** |
| **공통** | **거래목적** | 사업상 거래 다양한 결제수단 판매대금정산 대행  기타 : |
| **개인사업자** | **자금 원천 및 출처** | 근로 및 연금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상속/증여 일시 재산양도로 인한 소득  기타: |
| **신원확인정보**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여권 + 외국인등록증  여권 + 제외구간 국내거소신고증 |
| **법인사업자**  **(비영리법인/임의단체 포함)** | **자금 원천 및 출처** | 운영자금 구매자금 차입금 부동산 등 유형자산처분  유가증권 등 투자자산처분 기금 회비  기타: |
| **신원확인정보** | 주주명부 상장사 정관/규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기타: |
| **신원확인정보**  **(비영리법인/임의단체)** | 회원명부 사원명부 구성원명부 출자자명부 이사회명부  정관/규약 기타: |

20     년     월     일

|  |  |
| --- | --- |
| **상호 :** |  |
| **대표 :** | **(인)** |
| ※ 개인사업자:대표자 인감/법인사업자:법인 인감날인 필수 | |

**1. 일반정보 (필수)** (□ 부분은 업체 정보에 맞게 V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는 것은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사정보**  **(법인사업자)** | **상호명** |  | | | **사이트 URL** |  | |
| **사업자번호** |  | | | **대표자명** |  | |
| **주요판매품목** | 과세  비과세 (               ) | | | **대표전화** |  | |
| **운영자**  **(관리자)** | **성명** |  | **부서명** |  | | **직책** |  |
|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 | **이메일** |  |
| **가입경로** | 인터넷광고(검색) 인터넷카페광고 SNS (페이스북,블로그) 호스팅사광고 디자인업체추천 지인추천 영업담당자 기타 (기존가입자 등) | | | | | | |

※ 중요정보 및 공지사항은 이메일로 발송되오니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내용 및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역** | | **이용요금** | | | **비고** |
| **초기등록비** | 신용카드 | | 면제 | | | 초기 등록비 1회 결제 |
| 계좌이체 | | 면제 | | |
| **연관리비** | 모든 결제수단 | | 면제 | | | 매년 지불 |
| **기술지원** | 장애 방지/대응 서비스  모듈 관리/업데이트 | | 면제 | | | 결제수단 수수료에 포함하여 책정 |
| **시스템 운영관리** |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보안관리 | | 면제 | | |
| **※ 아래는 심사자 기재란 입니다. 작성하지 마십시오. 보증보험 및 승인한도는 모빌리언스의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 | | | | | |
| **보증보험** | | 년 만원 | | | 1년 단위 갱신 계약 | | |
| **승인한도** | | 월 한도 | | 월 만원 | 모빌리언스 심사 기준에 의거 적용 | | |
| 1회 한도 | | 1회 만원 |

**3. 결제수단 신청 및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역** | **이용요금** | | | | | | |
| **결제**  **수단**  **및**  **수수료** | 카드 | 일반구간 | 신용카드(인증) | | | | | 판매대금의 2.90 %(VAT별도) |
| 전화승인결제(통방판) | | | | | 판매대금의 2.90 %(VAT별도) |
| 1구간 | 시스템 비용 | | | 부가서비스 비용 | | 판매대금의 1.50 %(VAT별도) |
| 2구간 | 승인  매입  정산  관리자시스템  EDI | | (     ) % | 알림톡(SMS) | (     ) % | 판매대금의 2.20 %(VAT별도) |
| 3구간 | 판매대금의 2.35 %(VAT별도) |
| 4구간 | 판매대금의 2.60 %(VAT별도) |
| **※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자의 연매출 구간이 달라질 경우 1구간~일반구간에 해당되는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 | | | | |
| 계좌이체 | | | | | | | 판매대금의 1.80 %(VAT별도)  최저수수료 200 원/건(VAT별도) |
|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 입금기한 | 채번일+ 5일  채번일+ 10일 | | | | | 건당 300 원(VAT별도) |
| 휴대폰 | 컨텐츠  실 물 | | | | | | 컨텐츠 %(VAT별도)  실 물 %(VAT별도) |
| 상품권 | 해피머니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 | | | | | 상품권 %(VAT별도) |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카드) | | 카드 판매 대금 수수료 + ( ) % | | | | 판매대금의 %(VAT별도) |
| 카카오페이(머니) | | 머니 판매 대금 수수료 + ( ) % | | | | 판매대금의 %(VAT별도) |
| SSGPAY - | | 카드 판매 대금 수수료 + ( ) % | | | | 판매대금의 %(VAT별도) |

**4. 결제수단 정산주기**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역** | **정산주기 선택** | |
| **정산**  **주기** |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함) | 일정산(D+4일 정산) | 마감일 : 승인당일 |
| 계좌이체 | 일정산(D+4일 정산) | 마감일 : 승인당일 |
| 가상계좌(무통장입금) | 일정산(D+4일 정산) | 마감일 : 승인당일 |

**5. 입금계좌 및 세금계산서 수신정보**

|  |  |  |  |
| --- | --- | --- | ---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 **예금주** |  | **계산서 수신 e-mail** |  |

귀사의 매출대금을 지급할 때 상기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합니다.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귀사에게 귀책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부가서비스(현금영수증, 입금알림서비스) 신청**

|  |  |  |  |
| --- | --- | --- | --- |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신청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신청** | Y N |
| **정산대금 입금 알림서비스**  ※ 별도 부가서비스 비용 발생 | 알림서비스 신청 | **알림서비스 수신자(정산담당)** | **이름 :**       **휴대폰번호 :** |

※ 입금알림서비스 : 정산담당자 휴대폰번호로 발송됩니다.

**7. 모빌리언스 안심 서비스 적용 안내**

|  |
| --- |
| KG모빌리언스 안심서비스란 고객이 쇼핑 시 발생하는 쇼핑몰(가맹점)과의 분쟁을 대행 해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구매시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호장치이며 가맹점의 신규 고객 유치 상승 및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되며 KG모빌리언스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에서는 별도의 작업은 없습니다.)  KG모빌리언스 서비스 신청시 자동으로 적용되오니 원치 않으실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 특별 적용사항 (모빌리언스 기재사항 란)**



20     년     월     일

|  |  |
| --- | --- |
| **상호 :** |  |
| **대표 :** | **(인)** |
| **※ 개인사업자:대표자 인감/법인사업자:법인 인감날인 필수** | |

               **(이하 ”고객사”라 함)와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이하 ”회사”라 함)은 “고객사”와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목 적)**

본 특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1.12.30) 및 '시행령'(2021.3.2)에 따라 온라인전자상거래 시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사업자-“회사”)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고객사”)에게 지급하도록 해 거래상의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에스크로서비스 용어)**

① 배송개시일 : “고객사”가 고객의 거래에 대한 배송정보를 기입하는 일자로 배송정보라 함은 구매 고객의 성명, 배송지 주소, 연락처, 이메일, 배송업체명, 배송장번호 등을 기입한 일자로 한다.

② 구매결정 : “고객사”를 통해 고객이 거래한 물품이 배송이 되어 구매여부를 결정한다.

③ 자동구매확정일자 : “고객사”가 배송정보를 등록한 배송개시일을 기준으로 5일 이후 자동구매확정일로 정한다.

④ 원 거래일 : “고객사”의 상품을 고객이 구매한 거래 일자를 말한다.

⑤ 정산주기 : “회사”와 “고객사”가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에서 지정한 결제수단별로 지급되는 정산주기를 말한다.

**제 3 조 (에스크로서비스 대상거래)**

본 부속 특약서의 적용 대상 조건은 실물이 배송되는 서비스에 한하며, 배송되지 않는 컨텐츠 등의 무형의 서비스에는 적용 제외한다.

**제 4 조 (에스크로서비스 거래에 대한 “고객사”의 의무)**

1) “고객사”는 에스크로서비스 대상 거래에 대한 배송정보를 입력하여 “회사”에 배송개시일을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배송정보 미제공에 따른 불이익은 “고객사”가 책임진다.

2) “고객사”가 “회사”에 제공한 배송정보 중 이메일은 실질적인 대금지급에 대하여 확인되는 기초 자료로서 “고객사”의 쇼핑몰에서 거래한 ‘고객’에게 정확한 이메일 정보를 제공 받도록 노력한다.

3) 에스크로서비스의 배송업체는 운송장번호(배송현황에 대한 조회가능)를 제공하는 업체만 가능토록 진행한다. 이에 “고객사”는 **퀵서비스 등 배송추적이 불가능한**

**배송업체**를 통하여 배송 후 배송정보를 “회사”에 제공 시 추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회사”는 “고객사”가 제공한 에스크로서비스 거래 건에 대한 배송정보를 신뢰하되, 이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하여 검색 및 정보의 사실성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사”가 지도록 한다.

5) “고객사”의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고객’ 중 에스크로 서비스 대상 거래 건에 대해서는 에스크로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약관동의를 받도록 한다.

(구매결정 확인메일을 ‘고객’이 “회사”에 통보하는 시스템 - 약관의 일부 내용)

**제 5 조 (에스크로서비스 거래에 대한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에스크로서비스 거래에 대하여 배송정보 수집부터 대금지불까지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한다.

2) “회사”는 에스크로서비스 거래 건 중 정상적인 절차로 확인된 매출 대금에 대해서는 정산주기에 맞추어 “고객사”에게 지급한다.

**제 6 조 (에스크로서비스 거래 Flow)**

1) 서비스 Flow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① “고객사”는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배송한 당일(배송개시일) 에스크로사업자인 “회사”에 배송정보를 전송한다.

② “회사”는 “고객사”에게서 제공 받은 배송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구매결정 요청 메일을 발송한다.

③ ‘고객’은 주문한 물품을 수령한 후, 구매확인을 한다. (단, 물품의 하자나 기타 사유로 반품 요청 시 구매거절를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고객의 구매확인을 확인한 후, “고객사”에게 정산주기에 맞추어 대금을 지급한다. (제7조의 에스크로서비스 거래에 대한 정산 조항을 기초로 지급한다.)

⑤ “회사”는 대금을 지급 완료 시, 고객에게 에스크로 지급완료 안내 메일을 발송한다. (고객의 자동구매확정일자 이후 자동으로 에스크로 완료된 거래에 대해서도 대금 지급 완료 시 메일을 발송한다.)

**제 7 조 (에스크로서비스 거래에 대한 정산)**

1) 모든 에스크로 거래건의 경우 배송개시일(배송장 번호등록)이 등록되어야 정산대상이 되며, 배송개시일이 정산 기준일이 된다.

2) “회사”는 “고객사”에게 제6조의 에스크로서비스 거래 Flow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한다.

가.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 정산

① 자동구매확정일자 내 고객이 구매결정을 할 경우, 고객이 구매결정을 접수하는 일자 기준으로 “회사”는 “고객사”에 정산주기에 맞춰 대금을 지급한다.

② 배송개시일 기준으로 구매결정 기간이 지나 자동구매확정일이 되면 “회사”는 “고객사”에 아래와 같이 정산한다. (정산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지급한다.)

②-1) 원 거래일 기준으로 계산된 정산주기의 정산일이 자동구매확정일 보다 이후이면 해당 정산주기로 정산된다.

②-2) 원 거래일 기준으로 계산된 정산주기의 정산일이 자동구매확정일 보다 이전이면 자동구매확정일의 2일 이후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고객사”가 배송개시일(배송정보)을 자동구매확정일자 이후에 등록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②항과 동일하게 대금을 지급한다.

④ 단, “고객사”와 “회사”가 합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확정일 기준으로만 정산주기를 계산하여 정산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신용카드 정산

① 신용카드 에스크로 거래건은 배송개시일이 신용카드 매입일이 되며, 배송개시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 ‘고객’의 구매확인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 매입일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정산주기에 따라 정산한다.

② 신용카드 에스크로 거래건은 배송개시일이 신용카드 매입일이 되며, ‘고객’이 배송개시일 기준으로 5일 이내 구매확인을 체크하지 않았을 경우 매입일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정산주기에 따라 정산한다. (단, 정산주기에 벗어난 고객 구매확인 체크건은 가까운 정산일에 지급한다.)

3) 에스크로 거래의 정산은 전자결제서비스 계약보다 본 특약서를 우선적으로 준한다.

4) “회사”가 “고객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류하는 경우

① 상기 제 6조 1)항의 ①호에 의거하여 “고객사”가 “회사”에 배송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고객’의 구매거절로 회신이 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고객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류한다. 이 경우 “고객사”는 ‘고객’과 협의한 후 아래 두 가지 경우로 회신하여 대금지급 및 환불 받을 수 있다.

①-1) ‘고객’이 직접 구매확인을 체크 한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하고 ‘고객’ 확인 일을 기준으로 상기 에스크로서비스 정산기준에 의거 “고객사”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①-2) 환불처리(만일 물품의 반품으로 ‘고객’에게 대금을 환불을 해야 할 경우)

①-2-1) 계좌이체 당사의 계좌이체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 처리된다.

(“회사”는 “고객사”의 물품반품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 ‘고객’의 환불처리를 진행하도록 하며, 최초 발생한 승인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①-2-2) 가상계좌의 경우 환불은 “고객사”가 하며, “회사”는 정산주기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이때 “고객사”는 “회사”에 환불한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2-3) 신용카드의 취소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매출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고객’에게 신용카드 매출취소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환불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객사”와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의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정산 기준에 의거 처리)

5) 사고발생에 대한 처리

① 처리기준은 “고객사”와 “회사”의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서의 조항을 우선하여 적용/처리한다.

**제 8 조 (본 특약서의 효력발생)**

본 특약은 “고객사”와 “회사”가 각각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고객사”와 “회사”는 이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  |  |  |
| --- | --- | --- |
| **구 분** | **수수료** | **서비스 이용수단 (계좌이체, 가상계좌 모두 체크)** |
| **에스크로서비스** | 판매대금의 0 % |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 신용카드는 에스크로서비스 의무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  |  |
| --- | --- |
| **에스크로서비스에 따른 정보 활용 동의**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사”로 부터 취득한 배송정보 및 기타 정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에스크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20     년     월     일

|  |  |
| --- | --- |
| **(“고객사” : 이용자)** | **(“회사” : 제공자)** |
| ※사업자등록증의 정보로 기재 |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 |
| 상 호 명 :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
| 주 소 : | 케이지타워 16층 (순화동) |
| 대표(이사) :                                     (인) | 대표이사 유 승 용 (인) |
| **※ 개인/법인 사업자 : 대표자/법인 인감날인 필수** |  |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이 하 "회사")는 (이하 “고객사”)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객사” 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  |
| --- | --- |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객사”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 계약의 성립, 유지 및 종료를 위한 본인식별 및 실명확인  -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 및 입금 알림 서비스 제공과 월별 정산내역 안내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기관 정보제공  - 서비스의 추가와 변경내역에 대한 공지, 고객민원 및 문의에 대한 대응  - 부정 이용방지 및 비인가 사용방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 업무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담당자정보(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대금 입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대표자정보(이름, 국적,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주민번호)  접속정보(로그인ID,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접속IP정보) |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존하는 정보를 그 보존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  |  |  | | --- | --- | --- | | **내용** | **근거법령** | **보존기간**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년** |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 | **신용정보 업무처리에 관한 기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3년** | |

**“고객사”는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고객사”는 개인정보 및 관련정보를 “회사”가 위와 같이 수집∙이용함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대표자 :                 (인)  **※ 개인/법인사업자: 대표자/법인 인감날인 필수**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회사는 “고객사”의 동의 없이 “고객사”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제공목적** | **제공받는 자** | **제공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기관**  **정보제공** | **1. 신용카드 : 비씨, KB국민, 삼성, 신한, 롯데, NH, 현대, 하나**  **2. 계좌이체 : 금융결제원,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3. 간편결제 : 주식회사 카카오페이, 삼성전자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엔에이치엔페이코㈜, 롯데멤버스(주),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4. 휴대폰 : SKT, KT, LGU+, SK7mobile, KCT, 헬로모바일** | **사업자번호, 상호명, 생년월일, 홈페이지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서비스종료 시,**  **또는 상담 후**  **폐기** | | **5. 상품권 : ㈜한국문화진흥, ㈜티알엔, ㈜한국페이즈서비스, ㈜해피머니아이엔씨** | **사업자번호, 상호명,**  **홈페이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 |
| **개인정보**  **처리위탁** | “회사”는 “고객사”의 동의 없이 ”고객사”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  | | --- | --- | | **위탁 목적** | **고객상담 업무지원 위탁 수행** | | **수탁자** | **㈜메타엠** | |
| **개인정보제공**  **예외사항** | 회사는 “고객사”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고객사”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

**“고객사”는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고객사”는 개인정보 및 관련정보를 “회사”가 위와 같이 수집∙이용함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대표자 :                (인)  **※ 개인/법인사업자: 대표자/법인 인감날인 필수** |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및 시행령 제10조의5(실소유자 확인)에

따라 실소유자 정보 작성 및 자료 제출에 대한 본인확인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  |  |  |
| --- | --- | --- |
| **항목** |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생년월일, 주민번호** | **실소유자 고객확인** | **금융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 |

**“고객사”는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고객사”는 개인정보 및 관련정보를 “회사”가 위와 같이 수집∙이용함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대표자 :                (인)  **※ 개인/법인사업자: 대표자/법인 인감날인 필수** |

**1. 목적**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는 고객님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상품소개 및 마케팅 등 영업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 제한은 없습니다.

**2. 수집 및 활용 관련 정보**

활용되는 개인정보 및 제공된 정보의 이용목적은 아래와 같으며, 회원님들 중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신 회원님들의 정보만이 활용됩니다.

|  |  |  |
| --- | --- | --- |
| **항목** | **목적** | **기간** |
|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경품제공 및 프로모션 진행, 이벤트 활용, 신규 서비스 마케팅** | **제공일로부터 2년** |

**3. 정보제공의 동의 철회**

본 동의서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하신 회원 중, 마케팅활용 동의를 철회 하고 싶은 회원은 언제든지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정정, 삭제 및 정보제공 동의 철회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본인 확인 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동의 철회는 즉시 가능하나, 서비스에 반영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활용동의 철회를 요청하시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고객님의 정보가 마케팅에 활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본인은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 개인/법인사업자 : 대표자/법인 인감 날인 필수** |

**(이하”고객사”라 함)와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이하”회사”라 함))간에 체결한 "MOBILIPAY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부가하여 전화승인결제방식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특약합니다.**

**제 1 조 (목 적)**

본 특약은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 중 신용카드 전화승인 결제방식에 대하여 그 책임소재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결제방식)**

승인요청 이전 “고객사”의 공인인증서(“고객사”의 사업자용 인증서)와 “고객사”의 상담원(임직원)개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

승인 받는 방식(KEY IN)을 말한다. (“고객사”의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고객사”의 상담원[임직원] 개인 공인인증서를 추가로 로그인)

**제 3 조 (본인인증 및 부정사용, 민원에 대한 처리)**

1) 상기 전화승인결제방식은 신용카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단순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로 승인이 가능한 결제방식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의 진위성 및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는 “고객사”의 책임으로 한다.

2) 추후 카드사 및 기타 정부기관 등을 통하여 고객의 미사용 주장 및 철회항변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 “고객사”는 “회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고객과의 거래에 대한 환불 및 비정상 거래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또는 “회사”의 정당한 취소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해당 거래의 취소의무와 취소 건에 대한 대금의 환불 또는 상환의 책임이 있다.

4) 부정한 또는 불법적 거래로 인한 매출(현금성 대출, 본인 미사용건[도용사고 등])에 대하여 “회사”는 “고객사”에게 대금정산 의무를 지지 않으며, 만약 “고객사”에게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사후에 차감 또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

**제 4 조 (계약담보)**

1) “고객사”의 매출이 현금성 대출로 판명되거나 제15조 회원의 이의제기가 빈번히 발생(민원발생)하는 경우 또는 제5조와 제16조의 (모든 조항 해당) 비정상적인 해당

매출이 발생된 경우 해당매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대금지불보류를 통하여 “회사”의 “손실보증금”으로 처리 할수 있으며 만일 해당 매출이 “고객사”에게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사후에 해당금액만큼 차감정산 또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

2) “고객사”는 최초 계약의 담보로 “회사”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증보험 증권증서 (회사기재 )만원을 보증보험사에서 발부 받아 “회사”에게 제출한다.

2-1)”회사”와의 계약해지 시에도 보증보험 증권은 유효하며, “고객사”는 보증보험 증권을 보상기간까지 해지할 수 없다.

2-2) “고객사”가 “회사”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보증보험 증권은 1년 단위로 계약하되, 보증보험 계약 만기 2주전까지 계약 연장을 하여야 하며 연장하지 않을시에는 “회사”는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다.

3) “회사”는 “고객사”의 판매신용도 및 신용판매실적, 민원접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 1항의 “손실보증금”의 증액 또는 새로운 담보를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고객사”는 전 1항의 “손실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을 “회사”에게 따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5) 전 1항의 손해는 “고객사”가 영업점 폐쇄, 영업중단, 기타 사유로 회원과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본 계약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각종 피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6) “고객사”가 본 계약에 근거하여 현금 또는 카드사용대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보류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게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 “고객사”는 이를 제3자에게 채권 양도

하거나 질권설정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5 조 (정보유출 금지)**

1) “고객사”는 전화승인결제방식을 통하여 획득하게 된 회원의 카드정보 등에 대해서는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고객사”는 “고객사”의 공인인증서 접속기록을 보관하여, “고객사”의 임직원 중 어느 누가 전화승인결제를 실행했는지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고객사”가 “고객사”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화승인결제방식을 이용하여 결제한 이후, 해당 고객들의 신용카드정보가 유출되어 문제발생 시 “고객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

**제 6 조 (계약의 해지)**

1) “고객사”가 제공한 상품에 대하여 회원의 이의제기(철회 항변권, 본인 미사용 주장 등)가 빈번히 발생하여 더 이상의 계약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게 서면 또는 유선, e-mail을 통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2) 상기 1)항 및 기타 사유로 계약해지가 될 경우, 계약해지 이후 발생될 민원 등에 대비하여 “회사”는 “고객사”의 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하고 계약해지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이후 추가의 민원 등이 발생치 않았을 때 보류되었던 대금을 지급한다.

**제 7 조 (변경사항 통보 및 손해배상)**

1) “고객사”는 “고객사”의 사업자 정보 및 전화승인 대상 결제 상품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 시 즉시 “회사”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통보지연으로 회원 및

“회사”에게 문제가 발생 될 경우 “고객사”는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이때 “회사”는 “고객사”의 전화승인결제방식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변경사항 통보방법은 서면 또는 E-MAIL, FAX를 이용한다.)

2) “고객사”가 “회사”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할 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사이트 대표자 변경

나. 사이트 폐업 및 업종변경

다. 사이트 사업자번호, 주소, 대금결제계좌, e-mail, 연락처 등 변경

라. 사이트 판매물품 변경 (전화승인결제방식 대상 상품)

3) “회사”의 정책 및 카드사의 정책상 발생하는 각종 변동사항(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회사”는 “고객사”에게 변경 15일전까지 이메일 또는 서면(공문 또는 fax)으로 통보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 (특약의 효력발생)**

본 특약은 “고객사”와 “회사”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  |  |  |  |  |
| --- | --- | --- | --- | --- | --- |
| **전화승인결제방식 대상 상품** | | | | | |
| 카드 | 일반구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 판매대금의 2.9 % | 판매대금의 1.5 % | 판매대금의 2.2 % | 판매대금의 2.35 % | 판매대금의 2.6 % |
| 기타 시스템 비용 | | 승인, 매입, 정산, 관리자시스템, EDI ( ) % | | |
| 부가서비스비용 | | 알림톡 (SMS) ( ) % | | |
| 인증서비스 | | **무상제공**  (추후 카드사 비용 발생시 실비정산) | | |
| **※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자의 연매출 구간이 달라질 경우 1구간~일반구간에 해당되는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 | | |
| 정산주기 | 일정산 (D+4일 정산) | | | | |
| 한도/보증보험 |  | | | | |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고객사”와 “회사”는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사업자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요망**

20     년     월     일

|  |  |
| --- | --- |
| **(고객사 : 이용자)** | **(회사 : 제공자)** |
| ※사업자등록증의 정보로 기재 또는 법인명판 |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 |
| 상 호 명 :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
| 주 소 : | 케이지타워 16층 (순화동) |
| 대표(이사) :                                     (인) | 대표이사 유 승 용 (인) |
| **※ 개인사업자:대표자 인감/법인사업자:법인 인감날인 필수** |  |